

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투자유치
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9 월 23 일

여 수 시 장 서명하



여수시 조례 제2304호

붙임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”을 “위촉직 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, 당연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촉직 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제27조의 제목 “(위원의 제척·회피)”를 “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의결로 기피 여부를

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28조제4호 중 “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”를 “제2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”을 “사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재직 중인 위원에 대하여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6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 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 며, 당연직 위원은 제1항에 따 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 다.</u> <u>③ 위촉직 위원----- ----- ---</u>
② <u>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.</u>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 <u><삭 제></u>
<u>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	<u>⑤ 위촉직 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 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 록 한다. 다만,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

제27조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
(생략)

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<신설>

제2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
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
해촉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2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① (현행과 같음)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28조(위원의 해촉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제2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-----

5. ----- 사임 -----

--